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8호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총계				86	
제3회 경 령 경 쟁 임 용 시 험 (기술 계고)	9급	공 업	일반기계	16	경기도 3, 수원 2, 용인 2, 남양주 2, 오산 1, 안성 2, 양평 2, 과천 2
			일반전기	8	경기도 2, 수원 2, 용인 1, 의왕 1, 양평 1, 과천 1
		농 업	일반농업	5	용인 2, 안성 1, 양평 2
		시 설	일반토목	35	경기도 6, 고양 1, 용인 11, 부천 4, 화성 2, 평택 5, 안성 3, 양평 2, 과천 1
			건축	19	경기도 3, 용인 3, 부천 3, 화성 2, 평택 3, 구리 1, 안성 2, 양평 2
		방송통신	통신기술	3	용인 1, 의왕 1, 가평 1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분야)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기술 계 고)	9급	공 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일반농업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시 설	일반토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서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험명	직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계고)	9급	3과목	60분 (10:00 ~ 11:0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등) 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기술계고)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 한하여, 2004년 생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분야)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3회 경 령 경 쟁 임 용 시 험 (기 술 계 고)	9급	공 업	일반기계	경기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 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하고 거주지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전기	1)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붙임2]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붙임2]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 포함(2021.1.1.현재 기준)
		농 업	일반농업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일반토목	2) 성적요건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시 설	건축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3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고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방송통신	통신기술	3) 추천기간 -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서'[붙임3]는 추천서 제출기간(2021. 6. 21. ~ 6. 25.)내에 학교에서 일괄 제출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중퇴)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라. 거주지 제한

○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공통적용사항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의 전 직렬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 표준안」에 따라 학교소재지가 경기도이거나 응시자가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공개)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11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재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시험명	과목수	대상 과목 (비공개)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3	농업생산환경,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6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7. 5.(월) 09:00 ~ 7. 9.(금) 18:00 [취소마감일 : 7. 12.(월) 24:00] [학교장 추천서 제출 : 6. 21.(월) 09:00 ~ 6. 25.(금) 18:00]	필기시험	10. 8.(금)	10. 16.(토)	11. 22.(월)
		면접시험	11. 22.(월)	12. 3.(금)	12. 13.(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이후 시험 직렬(직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작성 및 응시 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
-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8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

-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직렬(직류)별 가산 자격증 안내’ 참조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험명	등록기간(기간 중 24시간 등록가능)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2021. 10. 16.(토) 09:00 ~ 10. 19.(화) 18:00

○ 가산점 등록대상 및 입력사항

등록대상	등록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점비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 득점)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기관 '경기도'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임용예정기관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신원 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카.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 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